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6.1		16		
2	2011.6.14		17		
3	2014.5.13		18		
4	2015.7.1		19		
5	2016.5.27		20		
6	2016.10.28		21		
7	2017.6.19		22		
8	2018.3.1		23		
9	2019.6.17		24		
10	2020.5.29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의 포상과 특별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적용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7>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9.6.17>

제 2 장 교원 특별성과 지원의 종류 및 지급한도

제3조 (종 류)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 특별성과 지원은 포상을 포함하여 학술활동 경비 지원, 논문 게재료 지원, 논문 장려금 지원, 학술연구비 지원, 개인 연구 장려금 지원, 기술이전 수입에 따른 지원, 전공 영어강좌 강의준비비 지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5.13., 2016.10.28>

제4조 <삭제 2019.6.17>

제5조 (지급한도) 교원 특별성과 지원 지급 한도는 사안에 따라 매년 교비 또는 산학협력 단 간접비 예산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4.5.13.>

제 3 장 교원 특별성과 지원 방법 등

제 1 절 포 상

제6조 (기본원칙) ① 포상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포상 수혜교원은 수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포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봉사 · 공로 포상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수혜여부와 관계없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5.27.>

제 6조의 2(장기근속포상) 대학발전을 위해 장기근속(10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한 교원으로서 재직교원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상내규의 내용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6.17>

제7조 (연구포상) 연구포상은 전년도 정기업적평가 연구영역 우수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9.6.17>

제8조 (강의포상) 강의포상은 전년도 정기업적평가 교육영역 중 강의평가 부문 우수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9.6.17>

제9조 (봉사 · 공로포상) 대학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현저한 공로 또는 봉사실적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 봉사 · 공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행정부서 및 학부(과)에서 추천한다.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6.5.27>

1. 추천서(별첨양식 7) 1부 <개정2016.5.27>

2. 후보자 공적조서(별첨양식 8) 1부

제 2 절 학술활동 경비 지원

제10조 (국제학술대회) ① 삭제<2017.6.19>

② <삭제 2014.5.13.>

제11조 <삭제 2018.3.1>

제12조 <삭제 2014.5.13.>

제13조 (기타국제회의) 전임교원이 동 규정 제11조 외의 국제회의에 참석할 경우 국제회의의 참석사유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6.19>

제14조 (예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학술활동 경비 지원은 교비 예산에서 지원한다.

제 3 절 논문 게재료 지원

제15조 (지원 조건 및 방법 등) ① 전임교원이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시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다.

1.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 및 Art & Humanities CitationIndex(A&HCI)

2.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개정 2020.5.29>

3. Scopus(단, 한국연구재단의 Scopus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

<호 신설, 개정 2016.5.27.>

4. 인정국제학술지(OECD국가<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네델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호주만 인정>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5개국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는 학술지)

<개정 2016.5.27>

5.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개정 2014.5.13. 2016.5.27>

② 논문 게재료 지원 산출 방법은 총 저자수로 게재료 총액을 나누어 산출한다. 단, 본교 및 타교 대학(원)생은 저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타교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논문 제출일이 졸업 후 1년 이내인 대학(원)생에 한한다.<개정 2015.7.1.>

③ 논문 게재료 신청자는 논문 게재료 신청서(별첨양식 5)를 작성하고, 게재료 납부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7.>

④ 논문 게재료 지원 예산은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4.5.13.>

제 4 절 논문 장려금 지원

제16조 (지원 조건 및 방법 등) ①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논문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학술지별로 지원 기준금액을 달리한다.<개정 2014.5.13.>

1.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 및 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A&HCI)

2.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개정 2020.5.29>
 3. Scopus(단, 한국연구재단의 Scopus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신설, 2016.5.27>
 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 후보지는 제외한다)<신설 2014.5.13., 개정 2016.5.27>
- ② 논문 장려금은 본 대학교 교원이 해당 논문의 주저자와 공동저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단, 공동저자 논문은 해당 논문의 주저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에만 지원한다.<개정 2016.5.27>
[전문개정 2014.5.13.]
- ③ 논문 장려금은 해당 교원이 장려금을 신청한 편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한다. 이 때, 편수는 논문의 출판연도 또는 게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원 개인별 연 단위로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4.5.13.><개정 2016.5.27>
- ④ 논문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편당 지원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5.13., 개정 2015.7.1., 2016.5.27., 2018.3.1>
1. 교원 개인별 논문편수는 주저자와 공동저자인 경우를 분리하여 산정하며, 그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규정 시행세칙<별표 3>의 주저자 인정기준에 따른다. 단, 주저자가 논문의 제1저자 또는 연락저자일 경우 이중 1인에게만 논문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5.27., 2020.5.29>
 - 가. 삭제<개정 2020.5.29>
 - 나. 삭제<개정 2020.5.29>
 2. 논문편수 산정 시 학술지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통합하여 산정하며,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개정 2016.5.27>
 - 가. SSCI, A&HCI, SCIE는 통합하여 편수를 산정한다.<개정 2020.5.29>
 - 나.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통합하여 편수를 산정한다.
 3. 주저자가 외부기관 소속인 논문에 본 대학교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저자로 포함되었을 경우, 공동저자 각각에 총 저자 수(n)을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총 저자 수(n)에서 본교 대학(원)생 및 타교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타교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논문 제출일이 졸업 후 1년 이내인 대학(원)생에 한한다.<개정 2016.5.27>

학술지 논문저자 및 논문편수		주저자		공동저자	
		연 1편 이하	연 2편 이상	연 1편 이하	연 2편 이상
SSCI, A&HCI		3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 1/n	100만 원 × 1/n
SCIE	상위 (주제분야별 IF 10% 이내)				
		일반	20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 1/n
Scopus		50만 원	-	50만 원 × 1/n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⑤ 논문 장려금 신청자는 교원 업적평가 시스템에 논문 정보를 입력한 뒤 ‘연구실적목록’을 출력하여 논문 장려금 신청서(별첨양식 6)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 ⑥ 논문 장려금 지원 예산은 교비 회계로 한다. <개정 2014.5.13.>

제 5 절 학술연구비 지원

- 제17조 (교비연구비 지원)** ① 전임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비에서 지원되는 학술 연구비를 말한다.<개정 2017.6.19>
- ② 본 연구과제는 외부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Seed Money개념으로, 본 대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 분야 또는 외부 Funding 기회가 높은 분야의 우수 연구 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교비연구비의 구분, 공모·신청, 심의·선정, 지원규모·기간, 신청자격,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술연구비관리규정」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27>
 - ④ 교비연구비의 예산편성·집행 등 연구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5.27>
 - ⑤ <삭제 2016.5.27>
 - ⑥ <삭제 2016.5.27>

제18조 (교비연구비 특별연구) <삭제 2017.6.19.>

제 6 절 개인 연구 장려금 지원 <개정 2014.5.13.>

- 제19조 (지급 기준 등)** ① 본 대학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이 외부연구 과제를 수주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개인 연구 장려금을 지원한다.<개정 2014.5.13.>
- ② 개인 연구 장려금 지원 예산은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재원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한다.<개정 2014.5.13.>
 - ③ 개인 연구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 강의 시수 경감, 업적평가 점

수 등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5.13.>

제 7 절 기술이전 수입에 따른 지원

제20조 (목적 및 지원기준) ① 전임교원의 직무발명 장려 및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수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② 기술이전 수입에 따른 지원 기준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7.1.>

제 8 절 전공 영어강좌 강의준비비 지원 [신설 2016.10.28]

제20조의2 (목적 및 지원기준) ① 전공 영어강좌의 개발과 강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그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과목당 일정금액의 강의준비비를 지원한다.<개정 2017.6.19>

② 강의준비비는 강좌 유형이 영어강좌로 지정되어 있고 강의계획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과목에 지원한다. 다만, 그 과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강의준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외국인교원 담당과목
2. 외국인교원이 포함된 팀티칭 과목
3. 영어학과 개설 과목
4. 강의내용 자체가 영어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

③ 한 학기에 같은 과목을 2강좌 이상 담당할 때에는 1강좌 분만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6.10.28.]

제 4 장 준용 등

제21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침의 폐지) 교원학술활동 경비 지원 지침과 전임교원 성과급 및 포상지침은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국제학술대회)의 지원은 2014년 3월 1일 이전에 국제학술대회 좌장 또는 주 발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 (인정국제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제4호 인정국제학술지의 논문게재료 지원은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게재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지원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규정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7. 3. 1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경우 임용 이후 3년 간 종전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논문장려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4항 편당 지원기준 금액은 2019년 3. 1일 이후 지원신청 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되, 논문 게재료 및 장려금 지원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7><신설 2009.6.1.> <개정 2016.5.27>

추천서(봉사·공로포상용)

추천부서장 (학부[과]장)		성 명	(인)
피 추천자	직위 :	성명 :	
* 추천자 의견			

※ 추천내용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별첨 8><신설 2009.6.1>

후보자 공적조서(봉사 및 공로포상용)

소속		성명	한글		생년월일	200 . .
			한자			
<p>* 공적내용</p>						

※ 추천내용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한국항공대학교 교무처장 귀하